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

-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 ③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이용료(2025년)

서비스 시간	재가급여 총 비용	본인부담금(이용료)		
		일반(15%)	감경(9%)	감경(6%)
30분	16,940원	2,541원	1,525원	1,016원
60분	24,580원	3,687원	2,212원	1,475원
90분	33,120원	4,968원	2,981원	1,987원
120분	42,160원	6,324원	3,794원	2,530원
150분	49,160원	7,374원	4,424원	2,950원
180분	55,350원	8,303원	4,982원	3,321원
210분	61,670원	9,251원	5,550원	3,700원
240분	68,030원	10,205원	6,123원	4,082원

2.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 제공 가능 횟수(2025년)

등급	월 한도액	1일 가능 시간	월 제공 가능 일수
1등급	2,306,400원	최대 4시간(240분)	31일
2등급	2,083,400원		28일
3등급	1,485,700원	최대 3시간(180분)	26일
4등급	1,370,600원		24일
5등급	1,177,000원	최소2시간~최대3시간	21일

3. 방문목욕 이용요금(2025년)

구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이용료)		
			일반(15%)	감경(9%)	감경(6%)
차량 내 목욕		86,480원	12,972원	7,783원	5,189원
가정 목욕	차량이용	77,970원	11,696원	7,017원	4,678원
	가정 내	48,690원	7,304원	4,382원	2,921원

계약 기간 및 해제

기관과 수급자와의 계약은 수급자의 인정서내의 기간에 계약을 실시하고, 인정서의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관계약기간의 끝으로 한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시 안내할 의무
- 바)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